

금지된 편견에 의한 괴롭힘, 협박 또는 왕따 행위 요약

인종, 피부색, 신념, 민족, 출신 국가, 시민권/체류 신분, 종교, 성별, 성 정체성, 성 표현, 성적 취향, 장애 또는 몸무게 등에 따라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, 협박 및/또는 왕따 시키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하고 편안한 학습 및 교육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뉴욕시 교육청의 정책입니다. 이런 괴롭힘, 협박 및/또는 왕따는 수용될 수 없는 행동이며 이런 행동이 교육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나거나 또는 학교 커뮤니티의 보건, 건강, 도덕 또는 안녕에 해를 끼친다면 학교, 학교 수업시간, 학교 방과 전 및 후, 학교 건물 내, 학교 후원 행사 또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 및 학교 건물이 아닌 장소에서 절대로 용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. 본 규정서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들어난 학생들은 규율규정 및 교육감 규정 A-443에 부합하는 적절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. 또래 간의 성희롱에 관한 불만은 교육감 규정 A-831를 참고해 주십시오.

다음은 학생 및 학생들이 차별에 기반한 행동이 무엇인지에 관해 안내하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.

시민권/체류 신분: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체류 신분 또는 미국 외의 나라의 시민 신분.

장애: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장애 또는 장애 내력. "장애"라는 용어는 (1)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주요 일상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갖고 있는 사람; (2) 이런 손상을 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; 또는 (3) 이런 손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. 주요 일상 활동에는 스스로를 돌보기, 걷기, 보기, 듣기, 말하기, 숨쉬기, 일하기, 육체 노동 수행 및 학습 등이 포함됩니다. 약품 또는 지원/보조 기기 등의 도움으로도 주요 일상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손상에는: AIDS, 알코올 중독, 실명 또는 시각 손상, 암, 귀 먹음 또는 청각 손상, 당뇨병, 약물 중독, 심장 질환 및 정신 장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민족/출신 국가: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출신 국가 또는 민족 고유성. 출신 국가는 여러 가지 인종과 종교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라도 한 곳의 나라 출신일 수도 있음으로 인종/피부색 또는 종교/신념과 구별됩니다. "출신 국가"라는 개념은 모든 국가 단체의 일원 및 동일한 조상, 문화 유산 또는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룹을 포함하며 또한 특정 국가 출신의 사람과 혼인하였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

성별 (성):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성별 (성), 임신 또는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상태.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에는 성 희롱이 포함됩니다.

"성별"이라는 개념은 또한 성 정체성, 자기 이미지, 외향, 행동 또는 표현이 개인이 태어날 때 규정된 법적인 성별에 따른 전통적인 것과 부합하는 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한 사람의 성 정체성, 자기 이미지, 외향, 행동 또는 표현을 포함합니다.

인종/피부색: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인종 또는 피부색.

종교/신념: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종교 또는 신념 (종교로서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에 관련 없는 기본적인 믿음).

성적 취향: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성적 취향. 성적 취향은 이성애, 동성애 또는 양성애를 의미합니다.

체중: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몸무게.